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문서번호 : HT-Q-I-42-08
	협력회사 신규등록 및 운용	제정일자 : 2009. 06. 01.
		개정일자 : 2024. 10. 07. / 개정차수 : 14

목 차

- 1. 목적
- 2. 용어의 정의
- 3.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 4.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 5. 거래 등록업체의 등록취소(말소)
- 6. 제재조치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문서번호 : HT-Q-I-42-08
	협력회사 신규등록 및 운용	제정일자 : 2009. 06. 01.
		개정일자 : 2024. 10. 07. / 개정차수 : 14

1. 목 적

이 실천사항은 협력회사 등록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협력회사"의 범위

- 2-1-1. 부품개발업체 : 부품개발업무 절차에 의하여 일반 자동차부품 개발 및 공급을 하는 회사로 당사 직접 거래 및 1차 부품회사로 인정되는 업체
- 2-1-2. 특수업체 : 특수한 용도의 부품만을 공급하는 업체 (군수업체 외)

2-2. “협력회사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회사 그룹을 의미한다.

2-3. “협력회사 등록”이라 함은 당사의 협력회사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2-4. “협력회사 운용”이라 함은 당사가 협력회사 풀에 등록된 업체에 대하여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회사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3-1.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포탈에 본 실천사항을 상시 공개한다.

3-2. 협력회사 등록 평가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갱신등록 대상업체에 대하여 45일전에 그 사항을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3-3. 협력회사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포함)으로 개별 통지하며, 미등록업체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전자문서포함) 통지하여야 한다.

3-4. 협력회사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기간은 20일로 한다.

3-5.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회사 등록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등록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3-6.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3-7. 협력회사로 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 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을 제한하거나 차별하지 아니한다.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문서번호 : HT-Q-I-42-08
	협력회사 신규등록 및 운용	제정일자 : 2009. 06. 01.
		개정일자 : 2024. 10. 07. / 개정차수 : 14

4. 협력회사의 신규등록 업무절차

4-1. 등록신청

신규등록 희망회사는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20일 이내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업체 등록을 신청한다

- 회사소개서, 신용평가서, SQ인증서(해당시), 신규평가 면제 사유서(해당시)

4-2. 평가신청

4-2-1. 신규업체 등록 신청을 받은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업무 관련팀에 신규업체 평가를 요청한다.

4-2-2.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신규업체 평가 면제 대상인 현대차/기아 1차 협력사 중 품질5스타 3스타 이상 업체에 대해서는 신규평가 면제 사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업체 등록 평가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4-3. 업체평가

4-3-1. 평가항목

- 평가항목은 ① 품질경영체제평가(100점), ② 신용등급평가, ③ 윤리평가(100점), ④ 안전보건역량평가로 한다.

4-3-2. 평가기준

- ① 품질경영체제평가 : 개발능력(40점), 제조현장(40점), 경영일반(2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 ② 신용등급평가 : 외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을 활용하여 평가한다.
- ③ 윤리평가 : 투명경영, 반부패, 불공정 거래방지 등 협력사 윤리경영 준수 여부에 대하여 일반(30점), 투명경영 및 반부패/이해상충방지(20점), 불공정거래방지(20점), 정보보호(20점), 책임있는 자재 구매(10점) 항목으로 평가한다.
- ④ 안전보건역량평가 : 안전보건경영방침, 안전관리계획, 보호구 지급계획, 안전보건 교육계획, 산업재해현황에 대해 평가한다.(PASS/FAIL)

4-4. 평가결과 종합

4-4-1. 당사와 거래 가능한 평가결과 점수는 품질경영체제평가 70점 이상, 신용등급평가 B등급 이상, 윤리평가 60점 이상이 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신용등급평가결과 B등급 미만이거나 신용등급이 없을 경우라도 업체등록이 필요할 경우 경영층 승인을 득한 후 등록절차 진행 가능)

4-4-2.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신규업체 등록 여부를 최종 검토한다.

4-5. 업체등록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평가결과 거래 자격이 있는 신규업체에 대하여 다음의 절차에 따라 업체 등록을 진행한다.

4-5-1. 해당 부품구매부서는 신규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안내하고, 신규등록업체로부터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4-5-2. 당사와 신규등록업체는 TPOS(구매포탈시스템)를 통하여 기본계약서,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준수서약서를 전자 체결한다.

4-5-3. 해당 부품구매부서는 기본계약서, 협력사 행동규범, 윤리준수서약서, 신규업체 등록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규업체에 대한 ERP 시스템 전산 등록 및 거래코드를 부여한다.

4-6. 거래개시 통보

해당 부품구매부서장은 신규업체 ERP 시스템 전산 등록 및 거래코드 부여가 완료되면 15일 이내에 신규등록업체에게 거래 개시 내용을 통보한다.

	하도급 4대 실천사항	문서번호 : HT-Q-I-42-08
	협력회사 신규등록 및 운용	제정일자 : 2009. 06. 01.
		개정일자 : 2024. 10. 07. / 개정차수 : 14

5. 거래 등록업체의 등록취소(말소)

5-1. 협력회사 등록취소(말소)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본 실천사항에 포함하며 당사 홈페이지 및 동반성장포탈에 본 실천사항을 상시 공개한다.

5-2. 아래의 사유 또는 당사와 거래 등록업체 간 체결한 기본계약서 상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거래 등록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말소)를 할 수 있다.

5-3.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등록취소(말소)를 할 수 있다.

5-3-1.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인·허가의 취소,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3-2.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휴업, 폐업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3-3. 해산, 청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3-4.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5-4. 다음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 등록취소(말소)를 할 수 있다.

5-4-1. 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5-4-2.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제조등의 개시일을 경과하고도 제조등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5-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등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 납품일자 내에 납품 또는 제조등의 완료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5-4-4. 인원·장비 및 품질관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계약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거래 등록업체의 책임있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5. 거래 등록업체에 대해 등록취소(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하고, 해당 거래 등록업체에게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당사의 귀책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재등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6. 당사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실천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한다.